

『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2000. 01. 28에 근거 법령인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이 폐지되고, 1998. 06. 30에 교리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, 존치 이유가 사라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」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기 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」은 구미시 교리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, 교리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1998. 06. 30 완공되고, 근거 법령인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이 2000. 01. 28 폐지되어,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